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688

2022. 3. 22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2. 3. 10.(전용균 의원 등 7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2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면적 비율을 확대하여 주민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설치면적 비율 확대(안 제17조)
: 사업부지면적의 0.6%(이상 : 교통영향평가를 미 실시한 경우) →1.0%(이상)
이면서 주차대수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규모 등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
-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면적 비율을 확대하고 주차 최소대수(30대)의 설치 면적(부지면적 또는 연면적)을 확보하여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